

『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7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7월 20일

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새마을과장 안 종 은

나. 제안이유

- 2006. 2. 5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,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활동의 범위(안 제3조)
 -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사회복지, 지역개발, 환경보전, 범죄예방, 기초질서계도, 재난관리, 체육진흥, 공명선거,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으로 정함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(안 제5조)
 -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 협의, 공공사업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,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의결 등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)
 - 시장을 위원장으로하고 행정지원국장, 복지환경국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나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
-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, 해임(안 제9조)
 -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,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시 해임
- 센터의 사업(안 제10조)
 -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,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 규정
-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(안 제11조)
 - 민간위탁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20인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-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(안 제16조)
 -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,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년을 자원봉사주간,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, 연구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 등
- 자원봉사자의 지원(안 제17조)
 -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입장료 면제, 문화행사 초대권 배부 등 4개호의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
- 보험가입(안 제21조)
 - 자원봉사센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절차를 정함

라. 참고사항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
-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(2006. 3 행정자치부)
-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(행정자치부 표준안)
 - 도 새마을봉사과 - 2361('06.4.28)호와 관련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이 2005. 8. 4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. 2. 6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-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법적근거 없이 산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추진 되어온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,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센터 장의 선임 과 해임, 센터의 조직 및 운영,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,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 안 제17조(자원봉사자의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중
 - 제2,3,4호는 시장 권한 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나
 - 제1호인 「공원입장료 면제」 조항은 공원개념을 시립공원, 도립공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시민들은 공원 입장료 면제를 지역에 소재한 도립공원인 금오산 입장료 면제로 혼돈할 우려가 있음
 - 도립공원의 입장료 면제는 도조례로 대상범위가 지정되어야 가능함(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 제21조제1항)
-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「시 조례는 도 조례에 위반 또는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」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「공원입장료 면제」 규정 여부를 심도있는 재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